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 시험 등 의뢰)** ①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축산물검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수출용잔류물질검사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별표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구매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잔류물질검사성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검사·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 ③검사·시험성적서는 의뢰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송부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2에서 정한 도축 및 원유 검사수수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동 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성적서를 재교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검사·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축산물 단속에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②도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검사·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 등으로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검사결과외의 광고 등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등의 결과는 검사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의뢰한 검사·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 검사 공영화 실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내지 아목을 각각 나목내지 사목으로 한다.